## 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1151호 2023. 5. 24. (수)

## 공 포

2	례 일부개성조례	설지 조례	묵구 동·반	부산광역시	조례 제1599호
3	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설치 조례	북구 통·반	부산광역시	규칙 제983호

## 발 령

훈령 제353호	무산광역시 묵구 일상감사 및 시공감사 규정 일무개성훈령	10
예규 제183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11

## 고 시

제2023-64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2
제2023-65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17

공					
람					

발행 : 부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래전략실 (☎309-5411)

#### 공 포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599호

####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통·반장의 위촉)"을 "(통장 및 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 2를 삭제한다.

제5조의 4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통반장 위촉 및 해촉 관련 규정 수정, 용어 정비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함.

- 가. 통·반장 위촉 해촉 관련 규정 수정(제5조제2항)
  - ▶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통·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통·반장 위촉 해촉 관련 규정 삭제
- ▶ 시행규칙으로 신설
- 다. 용어의 정비 :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통일·정비
- ▶ "위촉", "해촉"을 각각 "임명", "해임"으로 자구 정비

공 포

● 부산광역시북구규칙제983호

####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장의 임명) ① 통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 1. 해당 통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2. 70세 이하의 주민 중에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통장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반장은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 ②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통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 ③ 통·반장의 임기 만료일 또는 70세 경과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3조(통장 공개모집 방법) ① 통장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동장이 임명할수 있다.
- ②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통장 모집 공고 및 모집 결과는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통·반장의 해임) ① 동장은 통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
  - 2. 해당 통·반이 통·폐합된 때
  - 3. 해당 통·반에 거주하지 않을 때
  - 4.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 5. 제2조제1항제2호의 연령을 초과하여 제2조제3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 6. 통·반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인정될 때
- 7.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 활동 사항 평가의 실적이 저조하며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 8.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 9. 불미스런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 10. 조례 별표의 통장 윤리강령을 위반한 때
- 11. 그 밖에 지도력 등의 문제로 더 이상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단, 통장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 ⑥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 제6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임명장 및 통·반장 관리대장)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동장은 통 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통·반장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한다.
- 제8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 ① 통·반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비치·관리할 수 있다.
- ② 통·반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 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받아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
- ③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 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 3. 수혜대상자 선정
- 4. 방범신고망 운영

5. 공개행정 처리사항 
6.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통장신분증 발급)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부산광역시 북구 ○○○ ○○(○○동)
귀하를 부산광역시 북구 ○○동 제○○통장으로 임명합니다.
7002 1003/1 31 000 NIO088-1 18194.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 동장(인)

[별지 제2호서식]

## 통.반장 관리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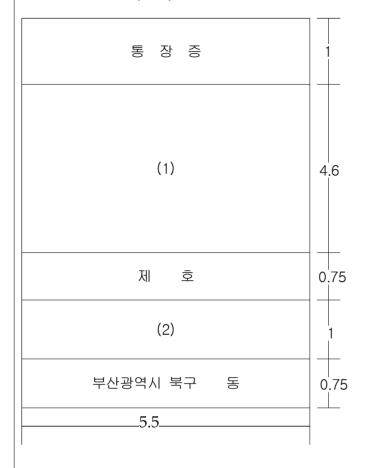
					임명 해임		-	결 자	1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직업	직위	임 명 일 자	해 임 일 자 (사 유)	담당자	행정 사무장	동 장

[별지 제3호서식]

## 통장증 규격 및 기재사항

(앞면)

(뒷면)



소 속 : 부산광역시 북구 동 통장	2				
성 명:	1				
생년월일 :	1.5				
부산광역시 북구 동장 (인) (3)	2.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 1. 위의 (1), (2), (3) 난에는 다음 사항 표시한다.
  - (1) 사진첨부
  - (2) 성명
  - (3) 발급기관의 직인
  - 2. 글자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글자의 색
통장증 앞면 기재글자	16포인트	고딕체	검정색
뒷면 소속기관명	14 "	명조체	"
이 증을바랍니다	8 "	"	"
그 밖의 뒷면 기재사항	10.5 "	"	"

3. 지 질 : 아트지

4. 바탕색 : 백 색

5. 단 위: 센티미터

#### ■ 제·개정(폐지) 이유

통반장 위촉 및 해촉 관련 규정 수정, 용어 정비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며, 통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가. 통·반장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신설(제2조)
- ▶ 현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의 연임 횟수(2회) 제한 규정 삭제
- ▶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제2항)
- 나. 통장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신설(제3조)
- ▶ 통장의 공개모집 공고기간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 다. 통·반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신설(제4조)
- ▶ 기존 조례에 규정된 해촉 사유와 더불어 통·반의 통·폐합,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통장 활동평가 실적 저조 등 사유 추가
- 라. 통장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5조)
- 마. 동장이 통장 임명(또는 해임)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규정 신설(제6조)
- 바. 용어의 정비: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통일·정비
- ▶ "위촉", "해촉"을 각각 "임명", "해임"으로 자구 정비

#### 발 령

●부산광역시북구훈령제353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일상감사 및 시공감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북구 일상감사 및 시공감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일상감사 및 시공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북구 일상감사 및 시공감사 규정"을 "부산광역시 북구 일상감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일상감사 및 시공감사"를 "일상감사"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및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일상감사 및 시공감사"를 각각 "일상감사"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상감사 및 시공감사"를 "일상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북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일상감사"를 삭제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상위법령에 구체적 위임 근거가 없는 시공감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시공감사 관련 규정 전부 삭제
- 나. 조문체계 및 약칭 등 정비

#### 발 령

● 부산광역시북구예규제183호

####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2023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주차장 정기 배정주기는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동장은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배정주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를 "주차장 정기 배정주기는 1년을 기본으로 하되, 동장은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배정주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정기배정을 실시하는 경우 동은 사전에 구에 정기배정계획을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5호를 제11조제6호로 하고,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자가 배정시간대 외에 주차방해 목적으로 무단적치물을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제2호 "주간제: (하절기 3월~10월) 09:00 ~ 18:00, (동절기 11월~2월) 09:00 ~ 17:00"를 "주간제: (하절기 3월~10월) 08:00 ~ 19:00, (동절기 11월~2월) 08:00 ~ 18:00"로 한다.

제18조제6항 "부정주차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정면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인근 주차장 이용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청구 시 부정주차 차량번호, 일시, 주차장 이용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를 "부정주차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정면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인근 주차장 이용 등을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청구 시 부정주차 차량번호, 일시, 주차장 이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주차장사용권의 취소.박탈>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1. 사용자가 배정시간대 외에 주차방해 목적으로 무단적치물을 설치하는 경우

####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구와 동 사이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부정주차 등 민원조치를 위한 운영지침 내 관련 조항을 개정함 으로써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가. 정기배정 시, 구와 동 간 업무협조를 위한 문구 추가(제7조제1항)
- 나. 사용자의 미배정시간 점용에 대한 조치 신설(제11조제5호)
- 다. 주간제와 야간제의 배정시간 공백을 없애기 위한 주간제 운영시간 조정(제12조제2호)
- 라. 부정주차로 인한 사용자 피해보상 범위 확대(제18조제6항)

#### 고 시

●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3-64호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부산시 고시 제158호(1972.05.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58호(2020.06.24.)로 도시계관리계획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8호(2021.5.5.)로 실시계획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29호(2022.3.3.)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051-309-469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가.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23-216번지 일원(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14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구포2 치안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72m. B=6→8m(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성명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구포동)
- 마.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사업착수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사업준공예정일 : 2022.12.31. (당초)

2023.5.30. (변경)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없음)
- 아래 조서와 같음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있음)
- 아래 조서와 같음
- 아.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 경미한 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경과지		비고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구 포 동 923-202	일반 도로	_	부고 제158호	
변경	소로	2	14	8	국지도로		구 포 동 923-221	구 포 동 923-202	일반 도로	_	(72. 05. 30.)	선형 변경

## ○ 경미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4호선	소로2-14호선	■ 경미한 선형변경 L=92m, B=8m	■ 사업구간 내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미한 선형 변경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없음) 소 유 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권 리 소재지 지분 비고 성 명 주 소 주 소 (당초) ( m²) ( m²) 내용 923 부산광역시 구포동 도 760 550 -221북구

# 

				구조	수량 및		실제이용		소유자			소유자	자외의 권리		
연번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및 규격	면적		상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비고	
1	구포동	923-217	공 가					추태자외 22인	추태자외22인						
								부산시							
	/W 74 OJ	O)	T CII	스레트	44.0	2		북구							
	(변경없	.音)	주택	/블록	41.0 m²	m		구포동							
								923-217							
		п	주방	스레트	6.3 m²	m²		물건소유자							
			T3	/블록		""		부재중							
		П	화장실	스레트	3.0	m²									
			100	/블록	0.0										
		п	기추 기추	스레트	8.1	m²									
			/블록		블록   0.1 '''										
		П	축대	자연석	34.8	m²									
		П	축대	옹벽	3.1	m²									

	<u> </u>	<u> </u>	i						1						
		п	담장	블록	3.9	m²									
		11	대문	알루미 늄	1	식									
αн	A TII TI	TIHJ		구조	수량	및	실제이용		소유자		소유자외의 권리			ш ¬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및 규격	면적		상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주 소 권리내용	비고	
2	구포동	923-217	주 택	슬래브 /블록	79.2	m²		추태자외 22인	추태자	외22인					
				슬래브				부산시 북구							
(변경	(변경없음)		보일러실	글대으 /블록	1.8	m²		구포동							
								923-217							
		П	축대	자연석	15.6	m²									
		п	대문	알퀴늄	1	식									
		П	담장	블록	3.0	m²									
		11	기름보일러		1	식									
		п	에어컨		1	식									
		П	대형냉장고		2	E A									
		п	전기계량기		1	식									
		П	수도계량기		1	식									

				구조	수량 및		실제이용		소유자			소유지	자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및 규격	면적		상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비고
3-1	북구 구포동	924						고석재	고석재					
								부산시						
								북구	부산시 북구					
								구남로	구남로					
			주택(1층)	슬래브	1.8	m²		11,101동8	11,101동802					
당초			수택(18)	/블록	1.0			02호(구포	호(구포동,성					
								동,성림누	림누리아라아					
								리아라아파	파트)					
								트)						
변경			주택(1층)	슬래브	0	m²								
당초			주택(2층)	/블록	8	m²								
 변경			주택(2층)	/블록	0	m²								
당초			주차장	/블록 CON' C	42.3	m²								
변경			주차장(3층)	CON'	33.2	m²								
당초			모과나무	H=3~ 4M	1	주								
변경			모과나무	H=3~ 4M	1	주								

고 시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3-65호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I.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신	안	기정액	증감액	%
Я						698,236		617,301	80,935	13.1
	일	반	3	킨	계	680,515		611,759	68,756	11.2
	<b>=</b>	별	3	킨	계		17,721	5,542	12,179	219.8
	의	료	글 0=	l 7l	己	1,427		1,080	347	32.1
	지	하	수	관	리	54		54	0	0.0
	주		차		장	16,240		4,408	11,832	268.4

#### II.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세	입			%			세		출	%
	계		68,756	100			계		68,756	100
지	바	세	1,085	1.58	인		건	비	2,637	3.83
세	외 수	입	267	0.38	물		건	Ы	2,431	3.54
지	방 교 부	세	270	0.39	경	상	0	전	6,193	9.01
조	정 교 부 금	등	5,150	7.49	자	본	지	출	25,008	36.37
보	조	己	14,026						ĺ	35.64
보내	전 수 입 등 부 거	및 래	47,958			비 비			7,983	11.61

## 3. 특별회계 예산(개요)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12,179	Ä	12,179
의 료 급 여 기 금	347		347
• 보 전 수 입 등	347	• 예비비및기타	347
주 차 장	11,832		11,832
• 세 외 수 입	7,544	· 인 건 비	56
• 보 조 금	2,409	• 물 건 비	4
· 보 전 수 입 등	1,459	∘ 경 상 이 전 ∘ 자 본 지 출	45 11,725
∘ 내 부 거 래	420	• 예비비및기타	2